

일본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

# 중요한 안내 말씀

식물을 일본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

## 검사증명서가 필요합니다

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\*을 일본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명서 (Phytosanitary certificate)를 첨부하여 수입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.

일본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식물도 있습니다. (뒷면 참조)

\* 과실, 야채, 곡물 등 이외에 절화(꽃가지), 종자, 묘목이나 식물을 원재료로 한 일부 가공품도 포함됩니다.  
또한 검사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(수입검사의 수검은 필요) 및 검사증명서와 수입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도 있습니다. (뒷면 참조)

식물방역법에 따라, 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식물은 폐기 처분대상입니다.

검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 및 수입 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## 식물의 병해충 침입경계 실시 중

MAFF

Ministry of Agriculture,  
Forestry and Fisheries  
農林水産省

# 일본 농림수산물성 식물방역소



## 일본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주요 식물

- 지중해 과실파리와 굴과실파리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에서 들여오는 대부분의 과실·과채류 (감귤류, 망고 등)
- 코드린나방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에서 들여오는 사과와 체리 과실, 껍데기가 붙은 호두 등

\* 그외 일본 미발생으로 세계적으로 피해가 큰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에서는 많은 식물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식물방역소에 문의하십시오.



지중해 과실파리



굴과실파리



코드린나방

## ◆ 검사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 (⚠️ 수입검사의 수검은 필요)

고춧가루, 산초, 무말랭이, 고비, 약용 인삼, 연밥, 대회향(팔각), 커피 생두, 해바라기 씨(식용) 등 동결건조 과정을 거쳤으며 재배, 사료, 비료, 농림업 생산자재로 사용되지 않는 것.

※ 주의 곡물류(쌀, 조, 옥수수, 메밀, 맥류 등), 콩류(대두, 팥, 땅콩 등), 목재, 카카오 콩, 참깨, 타마린드 건과, 고수, 일부 드라이 플라워·한약·향신료 등은 건조된 것이라도 검사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식물방역소에 문의해주십시오.

## ◆ 검사증명서의 첨부 및 수입검사의 수검이 불필요한 것

- 제재
- 제다
- 알코올, 초산, 설탕에 절인 식물 등

## 일본 농림수산물성 식물방역소 주요 연락처

- **요코하마 식물방역소**  
+ 81 - 45 - 211 - 7153
- **나고야 식물방역소**  
+ 81 - 52 - 651 - 0112
- **고베 식물방역소**  
+ 81 - 78 - 331 - 2386

- **모지 식물방역소**  
+ 81 - 93 - 321 - 2601
- **나하 식물방역사무소**  
+ 81 - 98 - 868 - 2850